

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

- 관세청 고시 제2009-113호, 2009. 8. 26 -

관세청은 2009. 5. 21 또는 7. 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거나 2009. 7. 1 할당세율이 인상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하는 과대환급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등에 관하여 고시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의 대상물품

- (1) '09. 5. 21 또는 7. 1 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·인상되는 원당 등 48개 품목중 수출이행기간 단축 실익이 미미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
 - '09. 5. 21 또는 7. 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사탕수수당 등 4개 품목
 - '09. 7. 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3개 원유제품

나.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

- (1) 할당관세율 인하('09. 5. 21, 7. 1) 품목
 - '09. 5. 20 또는 '09. 6. 30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원당 등의 4개 품목 : '09. 9. 30까지 제한
- (2) 할당관세율 인상('09. 7. 1) 품목
 - 원유, LPG 등 3개 품목 : '09. 7. 31까지 수출한 경우에는 '09. 6. 30 이전 수입신고필증으로만 환급제한

※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(www.customs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-154호, 2009. 9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작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